
일본 보험업계의 코로나19 대응상품 출시 동향

(1) 코로나 및 불특정 지정감염병 보상하는 휴업보상보험 개발

- (개요) MS&AD 인슈어런스그룹의 미쓰이스미토모 및 아이오이닛세이도와 손해보험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 및 기타 미지의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새롭게 개발
 - 일본 내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된 4월 이후, 정부의 긴급사태선언에 따라 전국적으로 휴업이 확대되면서, 대형손보사들은 코로나로 인한 휴업시 정액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20.4월)¹⁾
 - 기존 휴업손해보험은 대부분 1~3종 법정감염병만 보상하므로 코로나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 후생노동성에서 향후 코로나 감염병을 1~3종 감염병에 추가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각 업계에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촉구함에 따라 손해보험업계도 코로나로 인한 휴업시 정액보험금(20만엔)을 지급하기로 결정
 -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경영리스크를 보다 폭넓게 보상해주는 상품에 대한 니즈가 확대, 이에 대응하여 코로나 및 기타 미지의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손해를 보상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20.6월)

■ 상품 개요

- (보상내용) 시설 종업원/방문객이 ①코로나로 확진되어 휴업시 휴업일수에 따라 휴업손해보험금을 지급, ②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정감염병²⁾(불특정 지정

1) 미쓰이스미토모(2020.4.24.) 『코로나 보상 확대를 위한 상품 개정』, 손보재팬닛폰코아(2020.4.24.) 『신종 코로나 감염병 대응, 감염병 보상하는 보험상품 개정 안내』, 동경해상일동(2020.4.24.) 『신종 코로나에 관한 각종 상품 개정』

2) 지정감염병이란, 1종~3종 감염병 외 감염병 중 1~3종 감염병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감염병. 금번 코로나의 경우, 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약관에 명시된 특정감염병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대상에서

감염병)에 감염되어 휴업했을 경우, 정액보험금 20만엔 지급

- ❶의 경우, 1회 사고당 500만엔 한도 / 휴업일수 최대 14일 보상
- 단, 시설 내 확진자 발생/소독 조치 등의 조치를 동반하지 않은, 정부/지자체 요청 등에 기반한 자체적 휴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대상상품) 사업활동종합보험, 기업재산포괄보험

대상상품	대상 계약
사업활동종합보험	● 휴업손해를 보상하는 베이직/와이드/와이드플러스 플랜
기업재산포괄보험	● 휴업손해보상특약 또는 식중독·특정감염병이익보상특약이 부가된 계약

○ (보장개시) 2021년 1월 1일

○ (보험료 예시) 아래 계약조건의 경우 연간 33,000엔

- 감염병 뿐 아니라, 휴업손해보상전체(화재/풍수재해/파손 등)에 대한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상품: 사업활동종합보험 휴업손해보상조항 와이드 플러스 플랜 • 업종: 요식업 / • 건물구조: 철골구조
--

[그림1] 휴업손해보상보험 지급대상 변화



*출처: 미쓰이스미토모(2020.6.29.), 『코로나 감염병 등 미지의 감염병을 보상하는 휴업보상상품 출시』

제외되었었음. 이에,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향후 정부 발표에 따라 추가된 지정감염병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는 상품을 설계함

(2) 코로나 확산 지속으로 재택근무 장기화, 전용보험도 등장

- (개요) MS&AD 인슈어런스그룹의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 및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해보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택근무 종합보험을 출시
 - 지난 2~3년에 걸친 일본 정부의 근로개혁으로 재택근무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최근의 자연재해 발생 및 코로나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한층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사이버공격에 의한 정보 유출 리스크, 업무용 노트북 파손·도난 리스크 등 재택근무시 발생 가능한 각종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택근무보험을 개발
 - 명칭: 텔레워크 종합보상플랜
 - 기존의 사이버 보험, 동산종합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묶어서 구성

[표1] 텔레워크 종합보상플랜 개요

리스크	사고 예시	보험상품	
		미쓰이스미토모	아이오이닛세이도와
정보 유출	사이버공격, 업무용 노트북 반출시 도난/분실, 회사와 집 이외의 환경에서 업무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 등	사이버 프로텍터	사이버 보안 보험
재물손해	재택근무를 위해 집에 가져간 업무용 노트북, 태블릿 등의 파손 및 도난	동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사용자 배상책임	상사가 이석 여부를 과도하게 자주 확인하여 하루종일 노트북 앞에 앉아있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를 호소함 ⇒ 정신 장애	비즈니스 J넥스트 (업무재해 보상보험)	Tough 업무재해보상보험
고용관행 배상책임	온라인 미팅시 카메라에 비친 집안 모습, 주거 환경 등에 대한 소문이 회사 내에 퍼짐 ⇒ 프라이버시 침해		

*출처 :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2020.5.19.) 『재택근무 종합보험 출시』

(3) 코로나 시대 확대되는 포장·배달서비스, 관련 리스크 종합 보상

- (개요) 동경해상일동화재는 코로나 감염 확산을 계기로 음식물 포장/배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이에 대응하여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플랜을 개발(2020년 7월)
 -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기존에 매장 내에서만 음식을 판매하던 음식점들도 포장/배달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포장/배달 전문 음식점을 신규 런칭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외식문화 변화에 따라 사업 환경도 변화하고 있음
 - 포장/배달서비스는 사업장소가 매장 내에서 매장 밖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식중독 리스크 뿐 아니라 배달 중 제3자에 대한 배상사고나 종업원 상해사고, SNS상에서의 악플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
 - 이같은 리스크 대비 니즈에 대응하여, 동경해상은 포장/배달서비스 제공에 따른 각종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플랜을 출시

■ 포장/배달서비스 종합보상플랜 보상내용

- 연간 매출액이 5천만엔인 음식점의 경우 연간 보험료는 약 20만엔(표준플랜 선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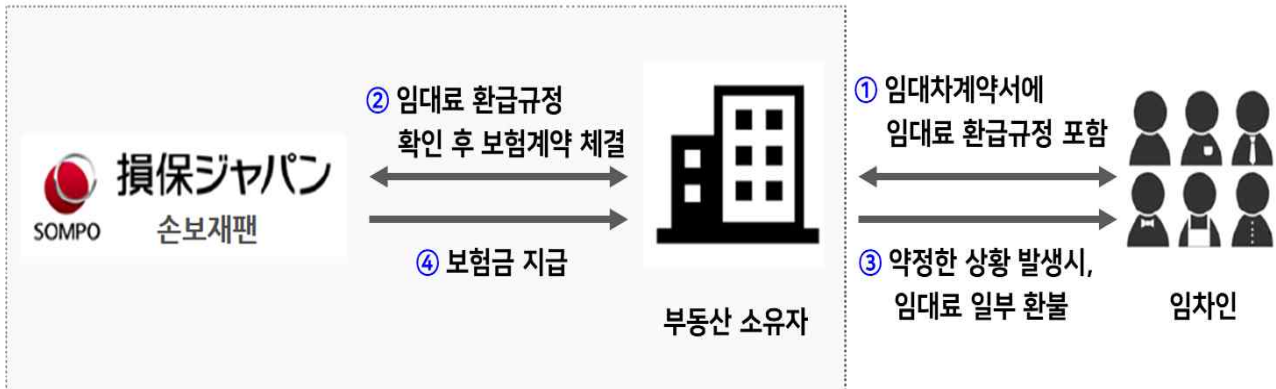
리스크	사고 예시	보상플랜
식중독 리스크	● 제공한 음식물이 원인이 되어 식중독이 발생, 고객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초(超)비즈니스보험의 '배상책임보상 및 휴업보상'
고객과의 분쟁 관련 리스크	● SNS상에서 근거 없는 악플/비방에 시달려 변호사에게 상담할 경우	● 초비즈니스보험의 '배상책임보상'
배달 중 리스크	● 고객 자택에 배달시 실수로 음식물을 쏟아 현관 등을 어지럽혔을 경우 ● 배달 중 종업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비를 지출	● 초비즈니스보험의 '배상책임보상' 및 '재산보상' ● 초T '프로텍션'(업무재해 종합보험)

*출처 : 동경해상일동화재 보도자료(2020.7.21.), 『포장/배달 음식점용 종합보상플랜 판매 개시』

(4)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손실, 보험으로 만회

- **(개요)** 손보재팬닛폰코아는 매출 감소로 임대료 지불이 곤란해진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대료를 환급해줬을 경우 임대료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부동산 소유자/관리회사용 「임대료 프로텍션 보험」을 출시(2020년 8월 1일)
- **(배경)**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외출 자제 및 특정 업종 사업자에 대해 영업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함에 따라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매우 큰 타격을 받음
 - 2020년 4월, 점포 임차인들의 영업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6.2%
 - 매출이 감소한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고 있으나, 임대인들도 임대료 수입 감소에 따른 타격이 예상되므로 이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
 - 이에 손보재팬은 임대료 수입 감소에 대비하는 보험을 개발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경영/파산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게 함
- **상품 개요**
 - **(계약자)** 임대인(부동산 소유자 또는 관리회사)
 - **(보상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미리 약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일부를 환급해줌으로써 감소한 임대료 수입을 보상
 - “미리 약정한 사건”의 예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정부/지자체 등이 점포 소독 및 휴점 등의 지시를 내렸을 경우
 -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사가 “미리 약정한 사건”에 대해 확인 필요

[그림2] 임대료 프로텍션 보험 상품 구조



* 손보재팬닛폰코아(2020.7.6.), 『임차인과 부동산소유자 보호하는 ‘임대료 프로텍션 보험’ 판매 개시』

(5) 코로나로 위기 맞은 여행업계, “국내투어 보상제도”로 지원

- **(개요)** 손보재팬닛폰코아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받은 여행업계의 회복을 위해, 여행사업자가 코로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비용을 보상하는 “국내투어 보상제도”를 개시(2020.7.8.)
- **(배경)**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2020년 3월 일본인 국내여행 소비액은 전년 동기대비 53% 감소하는 등 여행 수요가 대폭 감소했음
 - 여행/관광업계는 수요 회복을 위해 **여행 중 감염 리스크 및 취소 리스크 등에 대한 고객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대책과 관련 규정을 갖춘 안전한 여행을 제공할 필요
 - 이에 손보재팬은 적절한 **감염방지대책 및 관리규정을 마련한 여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를 개발**
 - 이러한 보상 제공을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지원하고 국내 여행업계 회복에 촉진하고자 함

■ 보상내용

- (계약자·피보험자) 여행사업자
- (대상여행) 손보재팬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감염방지대책을 갖춘 국내투어상품
- (보상내용) 여행사업자가 국내투어 진행시 '서비스 약관'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할 경우 이를 보상함. 위로금 예시는 아래와 같음
 - 투어 첫날 집합시 발열체크를 진행, 체온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여행에 참가하지 못했을 경우 위로금 지급
 - 여행 중 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 검사(PCR)를 받기 위해 여행을 중단한 경우 위로금 지급
 - 국내투어의 참가자가 여행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여행 종료 후 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위로금 지급
- (보험금) 투어대금의 범위 내로 1인 최대 10만엔
- (보험료) 투어상품 및 약관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하며 1인당 수백엔 수준
- (적용시기) 2020년 7월 8일 이후

(6) 코로나 관련 이익보상 확대한 종합패키지 출시 [숙박·요식·식품업]

- **(개요)** MS&AD 인슈어런스그룹의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해보험은 숙박/요식/식품업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을 출시(2020년 7월 말)
- **(배경)** 아이오이닛세이도와는 이미 기존에도 음식점/숙박업소 등의 종업원·내방객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식중독·특정감염병* 이익보상특약’을 판매해오고 있었음 [표1] 및 [별표1] 참조
 - 다만, 본 특약의 보상 대상은 상실이익과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에만 한정되어 있어 사고 발생시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
 - 아크릴판/비닐 커튼 설치 등 방역대책 관련 비용, 코로나 확진 종업원의 격리에 따른 초과 인건비, 내점형 점포에서 배달형 점포로의 영업방식 변경 비용 등
 - 이러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보상해주는 보험에 대한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 이미 판매 중인 코로나 관련 이익보상의 대상을 확대한 종합패키지를 출시
- **주요 보상내용**
 - ① **(기본 보상)** 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 생산물, 업무 결과 등에 기인하는 대인/대물사고로 인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② **(식중독·특정감염병 이익보상특약)** 식중독 또는 특정감염병(코로나 포함)이 발생하여 영업 중단/저해됨에 따라 입은 손실(상실이익 등)을 보상
 - 특정감염병에는 감염병법에 의거한 1종/2종/3종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³⁾이 포함되며,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 2월 코로나19를 지정감염병으로 지정함

3) 감염병법상 1종~3종 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은 감염병 중, 1~3종 감염병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1년 간 정부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지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입원강제조치 및 공적비용에 의한 의료 제공, 의사의 의심환자 발생 보고 의무, 환자발생시 적극적 역학조사 등이 가능해짐

③ (코로나 대응비용 보상) 시설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여 보건소 등에 의해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아래의 비용을 정액으로 보상

- 보상액은 사업자 규모에 따라 20만부터 최대 1,000만엔 중 설정

사업자 부담비용	예상되는 상황 예시
소독/청소 비용	내방객의 코로나 확진으로 해당 시설을 소독한 경우
레이아웃 변경 비용	비말 방지를 위해 아크릴판 등을 설치한 경우
임시고용 비용	종업원이 감염되어 2주간 격리 조치됨에 따라,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초과 인건비	종업원이 감염되어 2주간 격리 조치됨에 따라, 다른 종업원들이 잔업을 하게 된 경우
영업방식변경 비용	포장/배달 전문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일회용 포장용기 등을 구비한 경우
재고폐기 비용	감염 발생으로 휴업함에 따라 식재료 등 재고품을 폐기한 경우
컨설팅 비용	감염 발생 이후 대응책에 대해 전문가에게 상담한 경우
고지/안내 비용	감염 발생, 영업 변경사항 등을 홈페이지/신문 등에 고지한 경우
시설이용자에 대한 통신/우편 비용	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등으로 안내한 경우

④ 변호사 비용: 대인/대물사고, 경제적 피해 발생시 변호사 상담비용 보상

- 보험기간 중 100만엔 한도

[표2] 식중독·특정감염병 이익보상특약 [약관 발췌]

○ (보상내용) 다음 ①~③ 사고 발생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영업이 휴지 또는 저해됨에 따른 손실*을 보상

* 상실이익 및 수익감소방지비용

- ① 피보험자의 영업시설 또는 영업시설에서 제조/판매/제공하는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 ② 시설에서 감염병법에 의거한 1종/2종/3종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¹⁾ 및 신감염병(이하 '특정감염병') 발생
- ③ 시설이 식중독 또는 특정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의한 시설 소독, 격리 등 기타 처치

1) 일본 정부가 2월 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지정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본 특약의 보상대상에 포함

[참고자료]

동경해상일동화재 보도자료(2020.7.21.), 『포장/배달서비스 제공하는 음식점용 종합보상플랜 판매 개시』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2020.5.19.) 『재택근무 종합보험 출시』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 보도자료(2020.6.29.), 『코로나 및 불특정 감염병 보상하는 휴업보상상품 출시』

손보재팬닛폰코아(2020.7.6.), 『임차인과 부동산소유자 보호하는 ‘임대료 프로텍션 보험’ 판매 개시』

손보재팬닛폰코아 보도자료(2020.7.8.), 『여행사업자용 국내투어보상제도 개시』

아이오이넷세이도와손해보험 보도자료(2020.7.17.), 『코로나 관련 이익보상 확대』